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안 경위

가. 발 의 자: 유정희 의원 대표발의(외 10명)

나. 의안번호: 제661호

다. 발의일자: 2019. 5. 23

라. 회부일자: 2019. 5. 24

2. 제안 사유

최근 한강사업본부는 ‘건강한 한강’이라는 추진과제 아래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혹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여러 장기 사업을 계획 중에 있으나 야생 생·동물 보호 및 복원과 관련하여 한강공원 내 토지 사용과 절차 및 책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없어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려 함

3. 주요 내용

가. 한강공원 내에 서식하는 야생생물 보호의 일환으로 한강공원 내 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, 점유자, 관리인에게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의 권장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 2 신설)

4. 참고 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기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붙임

(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: 별도 붙임

5. 검토의견

가. 개요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해 토지 이용과 보호방안을 권장하고,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보호 규정 마련(안 제9조의2)

-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며, 이는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도 포함이 되는 것임. 다만 그 대상 범위를 보호 야생생물¹⁾로 정함으로써 서울시가 지정한 보호 야생생물에 대해 보다 집중적인 보호대책을 시행하도록 한 것임.
- 이와 비교하여 본 개정안은 한강공원 내 모든 야생생물의 보호 규정을 신설하여 이에 대해 필요한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	본 조례 개정안
제16조(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대책) ② 시장은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<u>보호 야생생물</u> 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. 이 경우,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제9조의2(야생생물의 보호) 시장은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<u>야생생물</u> 의 보호방안을 권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장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1) 보호 야생생물 :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

- 한강공원 내 서식하는 모든 야생생물을 대상으로 한 점은 한강의 자연성회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현행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임.
- 다만, 개정안의 대상을 토지의 소유자, 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. 그 이유는 「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」에서는 대상범위가 서울시 전역이므로 야생생물 보호를 위해 토지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합리적인 토지의 이용과 야생생물의 보호방안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지만, 한강의 경우 하천법의 적용을 받아 국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(하천법 제10조 제6항) 특정단체나 개인을 위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역(하천법 제4조 제2항) 이기 때문에 제9조의 2의 규정 신설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.
- 또한, 현행 조례 제1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야생생물 보호를 위한 단체에 대해서는 본 조례를 통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.

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

제1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한강 생태계 복원 및 공원시설 개선
 2. 수질, 환경, 생태, 경관의 보전 및 개선
 3. 한강의 문화예술과 역사의 계승 발전
 4. 각종 문화행사나 생태 프로그램의 운영
 5. 한강공원 커뮤니티 전문가 운영
 6. 그 밖에 한강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활동
- ② 시장이 제1항에 의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한강의 보전·이용과 관련된 법정 공익단체(법인)
 2. 한강의 보전·이용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
 3. 한강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사업(프로그램)에 참여한 임의단체·모임
- ③ 제2항에 의한 단체가 한강공원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- ④ 단체의 참여방법, 운영경비 지원,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- 현재 한강공원 내에는 법률에서 지정한 야생생물 관련 보호구역 4곳²⁾이 한강사업본부로부터 위탁을 받아 민간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음. 따라서 추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야생생물이 파악되는 경우, 제16조의 범위 내에서 비용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한강공원 내 야생생물 관련 보호구역 지정 현황

구분	대상지	위치		운영방식	사업비 (천원)	지정날짜	특징	지정면적 (m ²)
야생생물 보호구역	난지생태공원	난지 한강공원	마포구 상암동 496-121외 60	민간위탁	133,098	2013.03.14	하천습지생태계	56,633
생태·경관 보전지역	고덕수변생태공원	광나루 한강공원	강동구 고덕동 396번지 일대	민간위탁	135,504	2004.10.20 (2007.12.27 확대지정)	하천습지생태계	320,377
	암사생태공원	광나루 한강공원	강동구 암사동 624-1번지 일대	민간위탁	138,798	2002.12.30	하천습지생태계	126,844
	한강밤섬		(윗밤섬)영등포 구 여의도동 84번지 일대 (아랫밤섬)마포 구 당인동 313번지 일대	직접관리	88,000	1999.08.10	도심 속 철새도래지	273,503

- 따라서, 한강공원 내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본 개정안은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을 뿐, 현행 조례에서도 개정안의 적용대상이 포함되어 비용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심도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.

2) 한강공원 내에는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 제1항에 따라 야생생물보호구역 1곳 과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·경관보전지역 3곳이 지정됨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약칭: 야생생물법)

제2조(정의)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"야생생물"이란 산·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(自生)하는 동물, 식물, 균류·지의류(地衣類), 원생생물 및 원핵생물의 종(種)을 말한다.

2. "멸종위기 야생생물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
가. 멸종위기 야생생물 I급: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

나.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: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할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

5. "유해야생동물"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.

제26조(시·도 보호 야생생물의 지정) ① 시·도지사는 관할구역에서 그 수가 감소하는 등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을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"시·도"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보호 야생생물로 지정·고시할 수 있다.

② 시·도지사는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금지 등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33조(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등) ① 시·도지사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보호구역에 준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야생생물 보호구역(이하 "보호구역"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자연환경보전법

제23조(시·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의 지정·보전) ①시·도지사는 생태·경관보전지역에 준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시·도 생태·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.

하천법

제4조(하천관리의 원칙) ①하천 및 하천수는 공적 자원으로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.

②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(私權)을 행사할 수 없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
2.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
3.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(소유권자 외의 자는 소유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한다)를 받아 그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

제33조(하천의 점용허가 등)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1. 토지의 점용
2. 하천시설의 점용
3.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
4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
5.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
6. 그 밖에 하천의 보전·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